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1. 12. 12)

조례안 검토 보고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래만]

【 목 차 】

1.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1. 11. 22.

나. 제출자: 이성복, 강철우, 안철우, 백범영, 조기원의원

다. 회부일자: 2011. 11. 22.

2. 제안이유

-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과 관련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직무 대행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2항)

- “위원중 연장자가”를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위원중 최연장자”가 수행을 하던 것을 “위원중 최다선위원으로,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순으로, 다선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 7.14, 일부개정]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4>

<의안번호 제2011 - 84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1. 11. 22.

나. 제출자: 이성복, 강철우, 안철우, 백범영, 조기원의원

다. 회부일자: 2011. 11. 22.

2. 제안이유

-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별표)을 개정 함.

○ 현 행

별표 (2001. 3. 15) 과태료부과기준					
불 출 석		증언거부			
불응1회	불응2회이상	일부거부1회	일부거부2회	전체거부1회	전체거부2회이상
100만원이상	300만원이상	5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200만원이상	35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500만원이하	10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350만원미만	500만원이하

○ 개 정 안

위 반 행 위 별					
출석요구		서류제출·선서 또는 증언거부			
불응1회	불응2회이상	일부거부1회	일부거부2회	전체거부1회	전체거부2회이상
100만원이상	300만원이상	5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200만원이상	35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500만원이하	10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350만원미만	500만원이하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서류제출 및 선서거부 대한 벌칙이 신설되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백히 정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 7.14, 일부개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 당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 주도록 규정함.

나.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52조 제4항).

-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 한다)를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검토의견

-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예고에 관하여 필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금까지 거창군의회에 접수된 조례안은 입법예고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던 것을 5일 이상 입법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 결과까지 통보해 주기위한 것으로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제의 근본이 되는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구인 대표자에게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의 취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 7.14, 일부개정]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